

#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4. . .
발 의 자	김근한 의원

#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4. . .

발 의 자 : 김근한 의원(1인)

찬 성 자 : 강승수 · 김낙관 · 김민성 · 김원섭  
김재우 · 김춘남 · 소진혁 · 신용하  
양진오 · 장미경 · 정지원 의원(11인)

## 1. 제안이유

의원연구단체의 심의에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공정성을 더하고 차년도 운영계획의 수립과 결과보고서를 온라인에 공개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연구단체 활동이 되도록 하며, 연구활동비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수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위원 위촉 가능 단서 규정 신설 (안 제4조제3항)
- 나. 의원연구단체 운영계획의 수립 (안 제9조제2항)
- 다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온라인 공개 규정 신설 (안 제11조제4항)
- 라.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부당사용 시 환수규정 마련 (안 제12조제5항)

## 3. 개정조례안 : 붙임

##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심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명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의장이 위촉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다.

제9조의 제목“(연구활동 기간)”을“(연구활동 기간 및 운영계획 수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의장은 12월 31일까지 의원연구단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의원연구단체 연구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의장은 제3항의 승인받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구미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

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연구단체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,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

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④ (생략)

<신설>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연구단체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,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.